

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위탁 시 확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사업 위탁 시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, 충북도의 평화 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에서는 정책개발, 민간 교류사업, 교육 및 출판사업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안 제6조는 평화 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타당함.

- 특히, 민간 위탁을 통해 충청도 내 다양한 단체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·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, 지역사회의 통일 준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, 충청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